

의안번호	2206124
의 퇴 인	박용갑 의원
회 답 일	2025.1.16.
추 계 번호	24D5528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¹⁾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의 인구인지적 운용·분석방안에 관한 연구·개발을 시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1억 3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억 5,000만원(연평균 1억 3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지방재정의 인구인지적 운용·분석방안에 관한 연구 개발 (안 제4조제7호의2 신설)	130	130	130	130	130	650	130

주: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지방재정제도의 연구·개발 등)	－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인지 예산·결산 등 지방재정의 인구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에 대하여 연구·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함(제7호의2 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4조의2(지방재정의 인구증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등 성과 분석 등을 위한 지원 등) 신설	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인구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(제1항) 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인구영향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(제2항) 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인구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구정책담당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,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1) 이 개정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6122호), 「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6120호), 「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6121호)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612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
3	안 제36조의3 (인구인지 예산 서의 작성·제출) 신설	-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,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“인구인지 예산서”라 한다)를 작 성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²⁾ 에 따른 예산안에 첨부하 여야 함(제1항) -인구인지 예산서는 인구 증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, 그 밖에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---	---	---	-----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(지방재 정제도의 연구· 개발 등)제7호의 2 신설	○	—
2	안 제4조의2(지 방재정의 인구 증감 및 저출산· 고령사회 대응 등 성과 분석 등 을 위한 지원 등) 신설	×	-지방인구영향평가위원회와 인구인지예산 전담부서의 설 치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인구영향평가위원회와 예 산 전담부서의 구성 인원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하고, 인구 영향평가기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추진하게 될 사업의 내용과 범위 등을 추정 곤란
3	안 제36조의3 (인구인지 예산 서의 작성·제출) 신설	×	-인구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 형과 질적 향상,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하고, 인구인지 예산서는 인구 증 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기대효과, 성과목 표,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하는 등 이에 따른 각 지방자 치단체의 추가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. 다만,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			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규모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.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인지 예산제 운영 관련 조례가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등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--	--	--	-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지방재정의 인구인지적 운용 및 분석에 관한 연구·개발 비용은 유사 사례인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·결산 운영 사업의 연구·용역 비용을 준용하여 산출
- 개정안의 부칙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의 인구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에 대한 연구·개발을 시행할 경우의 소요 비용을 성인지 예·결산 운영 관련 연구·용역 비용을 준용하여 산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3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억 5,000만원으로 추계됨
 - 성인지 예·결산 분석 연구, 130백만원, 여성가족부 2025년
 -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·결산 운영 사업에 2023년부터 매년 1억 3,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을 참고하여, 개정안에 따른 연구·용역 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지방재정의 인구인지적 운용·분석에 관한 연구·개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지방재정의 인구인지적 운용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	130	130	130	130	130	6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4831	zisu37@nabo.go.kr